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8. 2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 안정을 통한 다자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대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 우대 및 지원중단, 포상(안 제7조 ~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 본 조례안은

-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 안정을 통한 다자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구에 소재하는 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우대 및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 이런 초저출산 현상에 맞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구청장, 구민,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의 책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
----------	-----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유승용, 이성수, 전승관  
김지연 의원(4인)

###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 안정을 통한 다자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대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 라. 우대 및 지원중단, 포상(안 제7조 ~ 제8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8. 8. ~ 2023. 8. 12.):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